

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사항

1. 연구생 등록 신청(승인) 대상

「학위수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
(석사: 수료 후 4년+2년, 박사: 수료 후 6년+2년)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<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>

2. 진행절차

① 신청서 접수(대학원학사행정실) → ② 의과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 → ③ 승인자 명단 제출(교무과)

3. 제출서류

[기한: 2021. 1. 22.(금) 17:00, 의과대학 대학원학사행정실(의과학관 117호) 제출]

- ① [붙임2 서식 2, 3, 4]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류(★)
- ② [붙임3 서식 6, 7] 2012.3.1. 이전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자(+2년) 중 1년 연장 희망자만 해당

4. 과정이수 방법

- ① 등록횟수: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,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<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>
※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
- ② 교과목 이수: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,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
<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>
※ 교과목은 학과(부)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.
※ **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.** 다만,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
- ③ 논문제출자격시험: 기 합격 사항 인정,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.
- ④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: 해당기관(학사과, 재무과)에서 공지하는 기간
- ⑤ 등록 절차 및 장소: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.

5. 유의사항

- ①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 후 **3년 이내**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.
※ 3년 연장 승인을 받을 경우 더 이상 추가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지도교수 상의 및 행정실 문의 후 신중하게 결정 요망(ex. 논문심사 자격요건 사전확인 등)
- ② 2011.11.27. 「학위수여규정」 개정으로 2012.3.1.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함. 단,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 취득자에 한하여 추가 1년 신청 가능.
- ③ 「학위수여 규정」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 및 학점이수를 해야 하며, 등록학기에는 「대학원 연구생 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대학원 연구생 부담금(이공계열 20만원)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(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함)

6. 기타문의: 의과대학 대학원학사행정실 [☐yey006@snu.ac.kr, ☎740-8033]